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7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3일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1명)

찬 성 자 : 최관술·장우윤·서영진·박진형·

황준환·우형찬·김제리·신원철·

유광상·김동윤 의원(10명)

1. 제안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며,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후단)

다.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신설)

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보를”을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7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6항 중 “위원에게는 예산”을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제4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u>정보</u>를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2. ~ 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 <u>정보</u> <u>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u></p> <p>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u>따른 행정정보</u></p> <p>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u>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u></p> <p>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u>따른 전자기록물 중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u></p> <p>라. 그 밖에 법 시행령으로 <u>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u></p> <p>2. ~ 5. (현행과 같음)</p>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법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을 고려한다.

② (생략)

<신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는 서울시의 공무원과 시의원 총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생략)

2.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4. (생략)

④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생략)

제12조 ~ 제14조 (생략)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의회-----

3.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한 번만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5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위탁)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빅데이터센터의 위탁받은 자는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생략)

제16조 ~ 제22조 (생략)

제16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변경하려는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 ~ 제23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